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2010 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6. 30.

- 맑은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차 례

1. 심 사 경 과 .....	1
2. 소관부서별 회부 .....	2
3. 결산개요 .....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4
5. 질의 및 답변 요지 .....	53
6. 토론요지 .....	53
7. 소위원회 .....	53
8. 심사결과 .....	53
9. 소수의견의 요지 .....	53
10. 참고자료 .....	53

2010 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6
----------	-----

2011년 6월 30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27) 상정·의결보류
  -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30) 상정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27) 상정·의결보류
  -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30) 상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28) 상정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28)상정·의결보류
  - 제23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30) 상정
-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 6. 24) 상정

## 2. 소관부서별 회부

### 가. 맑은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나.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마.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3. 결산개요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가. 일반회계

##### 1.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	미수납액
일반회계	150,638	204,762	199,924	97.6	4,838
세외수입	86,219	142,506	137,668	96.6	4,838
경상적 세외수입	80,714	71,105	71,057	97	48
임시적 세외수입	5,505	71,401	66,611	93	4,790
국고보조금	64,419	62,256	62,256	100	-

##### 2. 세출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355,864	15,019	85	△3,660 3,660	11	△2,936 2,936	370,979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70,979	333,658	322,594	12,839	35,547

## 나. 특별회계

###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수 납 율 (%)	미수납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39,500	223,963	223,903	99.9	60
경상적 세외수입	221,302	208,058	208,037	99.9	21
임시적 세외수입	18,198	15,905	15,866	99.7	39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집단에너지공급 사업 특별회계	239,500	-	-	-	-	239,50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588	8,550	-	-	-	21,1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집단에너지공급 사업 특별회계	239,500	217,984	217,984	-	21,51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1,138	20,435	11,296	9,171	670

## 다. 기금결산

### 1. 기후변화기금

#### 수입지출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22,236	13,860	22,691	8,831	36,096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0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예치금(36,09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0원)

####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42,222	13,774	22,605	8,831	55,996

※ 2010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예치금(36,09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99억원)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수입지출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4,361	2,406	19,779	17,373	6,767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0년도말 현재액 = 예치금 + 다음연도 이월액



□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0년도말 현재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0,221	4,406	19,779	15,373	14,627

※ 2010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예치금(6,767백만원) + 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7,860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 2,000백만원(08년도) + 3,860백만원(09년도) + 2,000백만원(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E)	징수율(%) (E/B)	미수납액
합계	51,738,458	58,798,774	51,530,462	87.6	7,268,312
세외수입	36,095,659	43,155,975	35,887,663	83.2	7,268,312
경상적세외수입	32,959,290	28,030,003	27,945,949	99.7	84,053
임시적세외수입	3,136,369	15,125,972	7,941,714	52.5	7,184,259
국고보조금	15,642,799	15,642,799	15,642,799	100	0

##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계	626,987,796	87,246,272	9,001,270	-	220,400
일반회계	350,633,797	43,165,741	3,769,800	-	220,400
도시개발특별회계	276,353,999	44,080,531	5,231,470	-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미필이월액)	집행잔액
계	723,455,738	654,168,320	565,455,928	91,408,950	66,590,859
일반회계	397,789,738	342,734,058	307,184,100	37,196,384	53,409,254
특별회계	325,666,000	311,434,262	258,271,828	54,212,566	13,181,605

## 다. 예비비 지출

### 1. 예비비지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미필이월액)	불용액
계	9,001,270	8,391,556	4,753,339	3,658,417	589,514
일반회계	3,769,800	3,569,329	3,569,329	0	200,471
특별회계	5,231,470	4,822,227	1,184,010	3,658,417	389,04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세입액(B)	세출액(C)	이월액(B-C)		
	계	당초예산	이월예산			계	순세계잉여금	개량·사고이월
2010년	898,083	801,000	97,083	866,172	764,607	101,565	43,487	58,078
2009년	1,060,742	895,000	165,742	993,969	887,745	106,224	9,141	97,083
증감	△162,659	△94,000	△68,659	△127,797	△123,138	△4,659	34,346	△39,005

**나.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금(B-C)	미수금처리		비율(%)	
			수입액(a)	과오납환불액(b)	실제수납액(c=a-b)		결손처분	익년이월액	조정(B/A)	징수(C/B)
2010년	898,083	889,729	867,036	864	866,172	23,557	536	23,021	99.1	97.4
2009년	1,060,742	1,018,171	994,467	498	993,969	24,202	969	23,233	96.0	97.6
증감	△162,659	△128,442	△127,431	366	△127,797	△645	△433	△212	3.1	△0.2

○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자체수입							고정채입부수
		계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월금	과년도미수금	자산매각	자본잉여금	
2010년	866,172	760,172	577,965	29,626	106,224	17,106	6,430	22,821	106,000
2009년	993,969	949,969	567,744	32,263	293,713	15,548	24,914	15,787	44,000
증감	△127,797	△189,797	10,221	△2,637	△187,489	1,558	△18,484	7,034	62,000

○ 미수금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영업미수금		기 타 미 수 금					결 손 처 분
		현년도	과년도	자산매각	임대료	변상위약금	잡수입 등	과년도	
2010년	23,557	15,755	2,389	65	44	1,444	438	2,886	536
2009년	24,202	16,883	2,563	65	187	481	283	2,771	969
증 감	△645	△1,128	△174	0	△143	963	155	115	△433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 (B/A)
		계	지출액	이 월 액				
				소 계	개 량	사 고		
2010년	898,083	822,685	764,607	58,078	8,597	49,481	75,398	91.6
2009년	1,060,742	984,828	887,745	97,083	19,432	77,651	75,914	92.8
증 감	△162,659	△162,143	△123,138	△39,005	△10,835	△28,170	△516	△1.2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이용, 전용, 이체) + 예비비 사용액

라. 불용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0년	75,398	3,797	954	26,445	5,363	21,632	17,207
2009년	75,914	1,383	1,131	20,488	10,259	25,324	17,329
증 감	△516	2,414	△177	5,957	△4,896	△3,692	△122

마. 예비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집 행 액	예비비 지출사유
8,205	2,842	2,812	·연금부담금 납부 등 3건

바. 예산전용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부족」 외 10건, 38억 97백만원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가. 세입

- 세입예산액은 139억 2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7억 2천7백 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40억 4천2백만원, 미수납액은 26억 8천5백만원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3,926	16,727	14,042	2,685

나. 세출

- 당초예산 2,177억 7천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6억 5천5백만원을 포함하는 예산현액은 2,752억 7천3백만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 2,527억 8천1백만원 중 지출액은 2,028억 9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27억 9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195억 8천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예비비, 이용	전년도 이월액					
217,772	2,847	54,655	275,273	252,781	202,892	52,796	19,584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413	438	423	15	96.6
세외수입	413	438	423	15	96.6
경상적세외수입	-	-	-	-	-
임시적세외수입	413	438	423	15	96.6
국고보조금	-	-	-	-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 경	전 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7,729	12,129	0	117 -117	0	0	29,858	24,177	233	5,448

## 나. 특별회계

###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12,122	12,502	12,502	0	100
세외수입	936	1,394	1,394	0	100
경상적세외수입	68	7	7	0	100
임시적세외수입	868	1,387	1,387	0	100
국고보조금	11,186	11,108	11,108	0	100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 비	변 경	전 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12,122	0	0	0	18 -18	0	12,122	10,880	281	961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청수)

### 맑은환경본부 소관

#### 가. 일반회계 세입 관련

-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의 3%에 해당하는 48억 3천8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47억 8천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지난년도 수입 47억 3백만원 미수납이 반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고질적인 체납이 큰 원인으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잡수입은 예산액 8억4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629억 2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전체 1,024억 7천만원)의 일부 금액(614억 8천2백만원)이 2010년도말에 수납된 것에 기인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때 잡수입으로 편성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예산편성시기(2009. 10월~12월)에는 편입부지규모, 보상금액 등에 대한 미확정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다만, 2011년도 세입예산에 잡수입이 1,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잡수입(보상금수납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p.113, 2011.6)



## 나. 일반회계 세출

### □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16건, 36억 6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2009년 회계에서 7천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관리하던 사업으로 2010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로부터 3천9백만원을 전용하여 시설비로 사용하였음(결산서 p.123)

### □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13건 29억 3천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사업은 2009년 회계에서 33억 6천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관리하던 사업으로 2010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로부터 8억5천1백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 p.139)
- 「RFID음식폐기물 종량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0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이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에서 8천3백만원을 변

경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 p.139)

- 본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라 시분담금으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간주처리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 시설비, 감리비 변경사용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예산전용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결산서 p.123)

#### □ 집행잔액

-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8.9%인 355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13.9%, 529억 6천7백만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2010회계연도에서는 “G20 정상회의 대비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에 예비비로 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는데, G20 정상회의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국제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활성화

-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손실 및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건물의 단열 보강, 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서울시에서는 먼저 시청사와 산하사업소, 자치구, 학교 등 공공건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절약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건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민간건축물의 참여 확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역시 예산상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기후변화 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sup>1)</sup>
- 그러나,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융자 지원」 사업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 300억원중 66억 8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불용비율이 77.7%에 달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sup>2)</sup>하게 나타나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임 (검토보고서 p.19)

## □ 과다한 사업취소로 인한 예산 사용 효율 저하

- 2010년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에 따르면 “LED 테스트베드 조성운영”, “녹색성장관리 홈페이지 구축”,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기후변화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0벤쿠버 국제환경회의 및 박람회 참여” 등에 대하여 사업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

1) 민간건축물에 대한 융자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08년 8개소(33억원), '09년 42개소(146억원), '10년 25개소(72억원)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였고, 시민 자발적 참여 76개소를 포함하여 총 151개소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융자조건 : 연리 3%, 8년 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2) 200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음. (검토보고서 p.22~23)

- "LED 테스트베드 조성운영사업"은 LED 제품에 대한 실증 및 검증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로 LED시장의 선도적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2010년도 예산으로 50억원 편성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50억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완전 취소되었음<sup>3)</sup>
- 본 사업은 2010년 예산심의시 한국광기술원에서 추진하던 “LED조명 실증센터” 구축사업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범위 조정 및 사업방향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과 조례가 제정된지 약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 환경교육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은 “시민환경교육 활성화(4억 5천8백만원)”, “조기환경교육 활성화지원(5억 9천5백만원)”, “에코스쿨운영지원(3억7천5백만원)” 등이 있으나,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사회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 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3) 본 사업은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여 짐

## 라. 기금

### 1.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을 살펴보면, 2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 도시가스사업 용자지원사업(80억원→10억원)과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사업(5억원→2억원)을 축소하고, 전기이륜차 확대보급, 복지시설 전기차 보급, 에코아파트 인센티브지원 사업 등 3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음  
(결산서 p.160)
- 그러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기금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sup>4)</sup>하게 나타나고 있음(검토보고서 p.21)
-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용자지원」은 지출계획현액 300억원 중 66억 8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율이 77.7%,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은 당초계획 5억원→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출액은 1억 2천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39%에 달하고 있음
-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BRP) 용자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ies)사업<sup>5)</sup>의 용자조건(서울시 연리 3.0%, 에너지관리공단 연리 2.7%)에 비해 지원조건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임

4) 200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5)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ies)사업을 통한 자금과 비교할 때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경제적 부담으로 기존 에너지 시설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해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혹은 에너지절약 서비스를 의미한다.

## ○ 기후변화기금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불용율 (%)
	당초	수정				
도시가스사업용자지원	8,000	1,000		1,000	450	55.0
민간그린홈 보급지원사업	1,635	1,635		1,635	961	41.2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용자지원	30,000	30,000		30,000	6,687	77.7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	500	200	-	200	122	39.0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지원	-	-	85	85	85	-
전기이륜차 확대보급	-	650		650	395	39.2
복지시설 전기차 보급	-	550		550	0	100
에코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	400		400	130	67.5
여유자금예치(예치금)	2,303	10,752		10,752	36,096	-
기본경비	8	8		8	1	87.5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 □ 종합의견

- 2010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 감리비를 반영하지 않아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잘못된 예산편성관행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지난연도 사고이월되어 현액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 기금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을 비롯한 용자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푸른도시국 소관

###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은 517억 3천 8백만원, 징수결정액은 587억 9천 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515억 3천만원으로 징수율은 87.6%임.
- 징수결정액의 12.4%(72억 6천 8백만원)가 미수납되었는데 전체 미수납액의 98.8%에 해당하는 71억 8천 4백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임. 이 중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0.1%인 58억 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결손처분액 2억 6천 3백만원을 제외한 55억 4천 2백만원이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면서 미수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 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가 몇 년에 걸쳐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2010년에도 시정되지 않았음.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수납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의 경우는 신속히 불납결손 처분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임.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977억 8천 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1억 6천 6백만원과 이용에 의한 2억 2천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3,977억 8천 9백만원임. 이중 3,071억 8천 4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율은 77.2%이며, 9.4%에 해당하는 374억 4천 9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되고, 13.4%에 이르는 534억 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지난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집행율은 87.2%에서 77.2%로 떨어졌고, 사고이월율은 8.4%(374억 4천 9백만원)에서 9.4%(371억 9천 6백만원)로 상승하였으며, 불용율은 지난년도 4.4%(199억 7천 4백만원)에 비해 13.4% (534억 9백만원)로 대폭 상승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약화되었다 할 수 있음.

### ▷ 이용에서의 비계획적 예산운용 사례 (결산서 p.121)

-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는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천 9백만원을 11월 15일 인건비과다로 이용을 통해 서울시립대 총무과 인력운영비(보수)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12월 15일에 3건, 11월 16일에 1건 총 4건의 이용을 통하여 시의회사무처 의정과, 시립미술관 총무과 등의 보수와 직급보조비에서 1천 8백만원을 충당하였음. 불과 한달사이에 인건비에 대한 과부족을 예측하지 못하고 비계획적,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운용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전용 및 사업변경 이전에 적정 추계가 요망되는 동물사유지관리비  
(결산서 p.125)

-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2010년도의 경우, 특히 서울대공원의 동물사유지관리비 중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는 총 전용 13건 중 6개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3억 1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또한, 서울대공원 동물공원 진료기능강화 공공운영비 9백만원은 사업변경을 통하여 서울대공원 공공운영비로 충당하였음. 다른 사업과는 달리 동물사유지관리에 대한 경상비의 부족은 동물의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정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예산회계법의 원칙에 어긋난 예비비의 사용 (결산서 p.135)

-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G20 정상회의와 같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기간이 필요한 국가적인 행사에 사계절 꽃길조성사업(2억 5천만원)과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녹지량 확충(19억 2천 5백만원) 등의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것은 2009년 9월 24~ 25일 미국 피크버그에서 열린 제 3차 G20 정상회의였음. 푸른도시국의 경우는 G20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는 설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 유치한 회의였다면 이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사전검토를 했어야 마땅함.

▷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된 사업의 취소로 인한 대규모 불용액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집행잔액 (결산서 p.152)

-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해치미로 설치, 소리테마파크조성사업, 노을카페 등은 짧은 기간내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매우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업임. 짧은 기간내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된 사업의 결과는 결국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예산현액의 98%에 달하는 122억 7천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또한 푸른도시국의 경우는 사업특성상 낙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아 불용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음. 특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율이 6.1%인데 반하여 푸른도시국 일반회계예산의 불용율은 13.4%로 불용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사유별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율이 전체 불용액의 48.3%,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율이 35.6%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노을공원에코랜드조성과 같이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예산이 집중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많은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비산정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2010년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의견

- 2010회계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76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40억 8천 1백만원의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3,256억 6천 6백만원임. 이 중 예산지출액은 2,582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6%인 542억 1천 3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에 이르는 131억 8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푸른도시국의 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은 지난년도 98.4%에서 79.3%로 큰 폭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율은 지난년도 10.7%(440억 8천 1백만원)에서 16.6%(542억 1천 3백만원)로 증가하였으며, 불용율도 1.6%(87억 9천 6백만원)에서 4%(131억 8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따라서 단순히 지난년도와 비교하면, 예산집행의 건전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년도 이월액의 93.1%가 보상협의지연 및 사전절차지연에 의한 것이고,
- 불용사유에 있어서도 불건전성 불용사유라 할 수 없는 낙찰잔액 등의 예산집행잔액(43.9%)과 예산절감(23.8%)이 67.7%를 차지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의 42억 6천 4백만원 중 20억 원은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예산현액 31억 3천 8백만원 중 20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가. 세입예산

- 수입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요구되며,
- 2010년도 징수결정액<sup>6)</sup>은 8,897억 29백만원으로 예산현액(8,980억 83백만원) 대비 99.1%로 전년도(96.0%)에 비해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성은 높아졌다 할 수 있음.

6) 징수결정액(세입결산액) = 수익적수입(상수도사업수익) + 자본적수입 + 이월재원

-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전년(1조 181억 71백만원) 대비 12.6%인 1,284억 42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 수익적수입<sup>7)</sup>은 6,252억 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2%로 유사하고 자본적수입<sup>8)</sup>은 1,353억 1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6%(43억 2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 이월재원<sup>9)</sup>이 1,291억 42백만원으로 전년(3,155억 63백만원) 대비 40.9%로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이월재원의 감소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1,183억 30백만원 감소<sup>10)</sup>하였고 현금이월재원액(전년도 건설개량이월액+사고이월액)이 685억 59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편,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505억 4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정부채수입이 전년(440억원) 대비 62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고정부채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역점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시채정투융자기금에서 전년도 440억원을 차입한데 이어 2010년에도 1,060억원을 차입하여 2010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2,483억원으로 전년(1,678억원) 대비 805억원 증가하였으며,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는 2013년을 정점으로 5,519억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2012년 9.9%의 수도요금 인상이 반영되고 반면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은 미반영된 결과로,

7) 수익적수입(상수도사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입

8) 자본적수입 = 고정자산매각수입 + 고정부채수입 + 자본잉여금수입

9)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 수용가미수금 + 기타미수금

10)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으로 세출예산 집행예상액을 직전 3년 평균 집행율 86.3% 수준으로 예상하였으나, 2009년도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집행을 독려한 결과 예산집행율이 92.8%로 높아졌기 때문임.

[중기재정계획 상 차입 및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차 입	1,500	1,530	550	-
원금상환	255	181	107	101
이자지급	124	146	186	213
채무잔액	3,727	5,076	5,519	5,418

- 만일 수도요금이 현 상태로 동결되고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증가분<sup>11)</sup>을 반영한다면, 부채 차입 및 채무잔액은 더욱 증가되어 2014년말 기준 약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 등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117억 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특별이익이 150억 13백만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475억원) 대비 33억 10백만원 감소한 441억 90백만원이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기순이익	86,118	61,229	57,143	47,500	44,190

- 한편,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441억 90백만원이었으나 지난 1월 수자원 공사와의 ‘용수료 청구소송’ 에서 최종 패소하여 서울시에서 ‘07~ ‘09년 용수료 미납금 623억 50백만원(전기오류)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되었으며, 결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9조(결손의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 이익적립금(1,145억 99백만원)에서 135억 28백만원을 결손금 처리할 계획에 있음. (결산서 P 202)

11) 과년도 미지급분 350억원, '11년도 부족분 215억원, '12년 이후 연간 308억원 추가

[결손금 발생 · 처리(안)]

(단위 : 백만원)

결손금발생(이익잉여금발생)				결손금처리(이익잉여금처분)				차기이월
계	전 기 이 월	전 기 오 류	당 기 순이익	계	이 익 적립금	감 채 적립금	건 설 적립금	미 처 분 이익잉여금
-13,528	4,632	-62,350	44,190	-13,528	-13,528	0	0	0

- 수도요금 총괄원가는 m<sup>3</sup>당 577.48원으로 전년(587.66원) 대비 1.73%인 10.18원이 감소하였고 공급단가(요금)는 m<sup>3</sup>당 514.27원으로 전년(514.27원) 대비 0.02%인 0.11원 감소하여 **요금현실화율**(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은 **89.0%**로서 전년도(87.5%)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 **요금인상요인<sup>12)</sup>**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전년도(14.27%)에 비해 **1.95% 감소한 12.32%**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5년간 요금인상요인 변동]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요금인상요인(%)	4.12	7.11	8.37	14.27	<b>12.32</b>

- 지속적인 부채 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요인이 감소한 원인을 보면 급수수익은 59억 98백만원 증가<sup>13)</sup>하였으나, 약품비 및 수선교체비<sup>14)</sup> 등 영업비용은 감소되고 자본비용이 적게 반영됨에 따라 총괄원가가 44억 8백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12)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13) 전년대비 급수인구 1.1% 증가로 급수량이 11,908천m<sup>3</sup>(0.2%) 증가

14) 배수지·가압장 환경개선사업이 '07~'09년도까지 완료되었고, 재원부족으로 지출을 억제하여 '10년도 수선교체비가 감소됨

- 총괄원가의 감소원인이 불급한 비용을 억제하여 발생한 영업비용의 감소와 차입금 증가 및 용수료미납금 등 미지급금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 하락(90.08→82.51%)으로 적게 반영된 자본비용<sup>15)</sup>에 의한 것으로 상수도 재정여건이 향상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 한편, 수도요금은 2001년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하였으나 인원감축<sup>16)</sup>, 유수율 향상<sup>17)</sup> 등 경영개선을 통한 내부흡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원수비 증가 및 자산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이 증가되어 요금인상요인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수도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재로써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월 10m<sup>3</sup> 이하의 사용가구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인 320원/m<sup>3</sup> 보다 훨씬 낮은 190원/m<sup>3</sup>의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월 10m<sup>3</sup> 이하를 사용<sup>18)</sup>하는 세대가 증가하여 795천 세대가 190원/m<sup>3</sup>의 낮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중 혜택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33천세대에 지나지 않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sup>19)</sup>하는 동시에 월 사용량 10m<sup>3</sup> 이하에 적용되고 있는 190원/m<sup>3</sup>에 대해서는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자본비용 = 요금기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보수(6%)

16) 인원 감축 : 2,890명('01년) → 2,764명('06년) → 2,216명('10년)

17) 유수율 향상 : 75.3%('01년) → 90.2%('06년) → 93.3%('10년)

18) 서울시 일반 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은 약 16.6m<sup>3</sup>/월

19) 현행 구경별 기본요금만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월 사용량 10m<sup>3</sup>까지 사용요금을 감면해줌(안)

[가정용 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사용량(m <sup>3</sup> )	0~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
단가(원/m <sup>3</sup> )	320	510	570	790
비 고	*세대당 월 10m <sup>3</sup>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요금은 1m <sup>3</sup> 당 190원			

나. 세출예산

□ 예비비 지출 (결산서 P 118)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91%)으로 전년(114억 4백만원) 대비 31억 99백만원 감소하였고, 지출결정액은 연금보전금률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납부」 25억 22백만원 등 총 3건에 28억 42백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 이중 28억 12백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 없이 30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비율은 1.0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연금부담금 납부	2,522	2,495	산정기준 및 요율인상으로 예산 부족(5.5→6.3%)
건강보험부담금 납부	279	276	보험요율인상으로 예산부족(2.54→2.66%)
상수도 GIS구축 국고보조금 반환	41	41	미집행 국고보조금 연말 국고 미반납 및 '10년 반납예산 미확보



□ 예산이월액 (결산서 P 120~133)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외 72건, 580억 79백만원으로 전년(970억 83백만원) 대비 40.2% 감소하였는데,
- 이중 **건설개량이월액**<sup>20)</sup>은 85억 98백만원(3건)으로 전년 대비 55.8%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sup>21)</sup>은 494억 81백만원(71건)으로 전년 대비 36.3% 감소하였음.
-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및 책임감리용역’은 토지사용승락 협의 및 행위허가(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광암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3차)’는 계약업체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차 계약이 ‘10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예산액 전체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건설개량이월 한 것이며,
- ‘상수도 GIS웹 전환구축’은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위해 용역수행 기간을 18개월로 하여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향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이월 사유 중 유관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은 6건, 46억 58백만원(이월액 대비 8.0%)으로 전년(0.1%) 대비 증가하였고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기타 사유에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절대소요 공기확보로 인한 이월<sup>22)</sup>’의

20)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본예산 중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재이월 가능

21) 원인행위를 했으나 지출을 못한 경우와 부대경비, 감리비 등을 원인행위를 못하고 이월하는 것

22) 기타 이월사유 51건 중 12건을 차지하고 있음

경우는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유를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임.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유]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공기부족	선행조치지연	유관공사지연	기 타
2010년	58,078	3,156(6건)	6,880(10건)	4,658(6건)	43,385(51건)
	100(%)	5.4	11.9	8.0	74.5
2009년	97,083	22,305(11건)	10,553(16건)	119(1건)	60,106(58건)
	100(%)	23.0	10.9	0.1	66.0

- 한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6.5%로 전년도에 비해 2.7%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서울특별시 일반회계 2.2%, 타 특별회계 8.3%),
-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상수도공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물량, 사업비 등)과 적시에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공기부족이나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절대소요 공기확보에 따른 예산의 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결산서 P 134)

- 2009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정수처리실증플랜트 및 교육장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98건, 970억 83백만원으로,
- 이중 874억 87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전년도 이월액 대비 90.1% (건설개량이월 77.3%, 사고이월 92.1%)로 전년도(95.7%)에 비해 5.6% 감소하였으며,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정수처리실증플랜트 및 교육장 설치공사」 0.7%,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0.6%, 「한남역~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는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 예산전용 (결산서 P 142)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2010년도 예산전용액은 「돌발누수사고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외 10건, 38억 97백만으로 전년(94억 73백만원) 대비 41.1%(55억 76백만원) 감소되었음.
- 주요 예산전용 사례는 ‘돌발누수사고 증가<sup>23)</sup>에 따른 예산부족’ 28억원, ‘본부청사 증축시 건축면적증가, 장애시설보완 및 추가 등에 따른 예산부족’ 3억 74백만원, ‘남부청사 리모델링시 천장누수, 방수공사 등 물량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3억 38백만원, 성과상여금 예산부족 1억 25백만원, ‘영등포정수센터 병물공장 신설 후 사용할 지게차 구매예산 미확보’ 16백만원 등을 전용하였는데,
- 이중 ‘본부 청사증축공사(시설비)’ 및 ‘남부청사 리모델링공사’는 각각 전용 후 전용예산의 83.7%(3억 13백만원), 37.9%(1억 28백만원)을 과다 불용시키고 있고 ‘본부 청사증축공사’나 ‘지게차 구매’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

23) 유수율 향상을 위해 누수의 육안노출 이전에 적극적인 지하누수탐사를 통해 누수를 사전에 발견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10년도 돌발누수사고 건수는 16,634건으로 전년대비 1,144건이 증가하였음

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전용시에도 예산을 과다 전용하여 불용시키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불용액 (결산서 P 172)

-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8,980억 83백만원) 대비 8.4%인 753억 98백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불용액 759억 13백만원에 비해 5억 15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전년도(7.2%)에 비해 1.2% 증가하였음.
- 불용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전년도의 경우 불용액의 33.4%가 낙찰차액으로 가장 높은 반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율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찰차액, 예산집행잔액 등의 순이었음.

[불용액 원인별 구성비]

(단위: 백만원)

년 도	합 계	낙찰차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2010년	75,398	21,632	26,445	17,207	5,363	3,797	954
	100%	28.7%	35.1%	22.8%	7.1%	5.0%	1.3%
2009년	75,913	25,324	20,488	17,329	10,259	1,383	1,130
	100%	33.4%	27.0%	22.8%	13.5%	1.8%	1.5%

- 주요 불용 사업 중 ‘한남역~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는 이월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공사계약업체인 청람건설(주) 공사부도로 본 사업을 타절준공하였기 때문이고,
- ‘정수처리실증플랜트 및 교육장 설치공사’ 의 경우 정수처리 실증플랜트

를 설치하여 기존, 개선 및 고도처리공정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서 기술개발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고 장래 국내·외 상수도 기술자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 시설부지가 천호대로 확장 및 아차산 녹지축 연결선상에 있어 계획부지 변경에 따른 용역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2009회계연도에서 건설개량이월된 이후 기본/실시설계용역 결과 140억원(당초예산 22억 71백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됨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을 유보함(계획변경취소)에 따라 이월액의 99.4%(22억 56백만원)가 미집행되어 불용된 것으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의 사례이며,
-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0%이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율이 50% 이상인 사업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4%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6.1%, 특별회계 10.4%로 타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몇몇 사업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 종합의견

-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95% 감소한 12.32%를 나타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상수도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불급한 비

용을 억제하여 발생한 영업비용의 감소와 차입금 증가 및 용수료미납금 등 미지급금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총괄원가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상수도 재정여건이 향상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특히 수도요금의 동결되고 수자원공사와의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 용수료의 납부 및 기득수리권 상실에 따른 원수 구입비(28.63원/m<sup>3</sup> → 43.84원/m<sup>3</sup>)의 상승으로 상수도 재정여건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수도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재로써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190원/m<sup>3</sup>의 요금단가(월 사용량 10m<sup>3</sup> 이하에 적용)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예산이월 및 전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의 정확성 및 예산집행의 신중함이 향상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 전용이나 부정확한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 후 높은 불용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강사업본부 소관

### 가. 세입총괄

- 2010회계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의 15%에 해당하는 26억 8천5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4억 7천7백만원으로 지난해도수입 21억 6천 6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
2010년도	1,753	1,753	3,596	1,118	2,477	31.0
2009년도	1,079	1,079	4,023	1,628	2,395	40.0
2008년도	396	396	4,802	2,553	2,249	53.2
2007년도	376	376	1,897	692	1,205	36.5
2006년도	284	284	1,042	459	583	44.0

- 매년 반복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향후에는 미수납액과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을 비교하여 수납가능성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납결손처분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누락

- 「하천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한강사업본부장)은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세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세빛둥둥섬과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조성사업의 경우는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대상임



<그림 1> 세빛둥둥섬 과 여의도 요트마리나

- 세빛둥둥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익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에 해당하며, 준공이후 25년간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며 운영하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공사기간(2009.3.3~2011.5.31)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세빛둥둥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플로라(주)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논리대로 공사기간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2010년도에 서울플로라(주)에 부과·징수한 하천점용료(약 680만원)는 당연히 환급되어야 할 것임<sup>24)</sup>



- 여의도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주)서울마리나 측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sup>25)</sup>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2010.2.~2011.4)동안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세출총괄

- 한강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77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46억 5천4백만원, 예비비 8천3백만원, 타부서로부터의 이용에 의해 20억 1천6백만원 증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52억 7천3백만원임
- 이중 2,028억 9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27억 9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9.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5억 8천5백만원(예산현액대비 7.1%)이 불용처리되었음

### □ 예산 이용

- 2010회계연도 이용은 총11건, 20억 1천6백만원으로 그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임
- 인건비 예산은 조직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고, 본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진다면 이용을 통한 예산의 추가확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임

24) 소울플로라(주)에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구역은 플로팅아일랜드(반포동 650번지일대)가 아니라 주변지역(반포동 650-1)이라도 점용목적이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면제해 주었어야 할 것임

25) 「하천법」 제1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할 경우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의 경우 기획조정실에서 "2010년 인건비과부족 현황과약"이라는 공문을 전부서에 시행하고 일괄적으로 조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예산의 이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7조<sup>26)</sup>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을 통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서울시의 예산총칙상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2010년도 예산총칙>**

제8조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26)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외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 예산전용

- 2010회계연도 전용은 총19건, 70억 8천1백만원으로, 한강공원 특화사업(여의도, 뚝섬, 난지)의 시설비, 감리비로 57억 6천5백만원, 전망카페 응급복구비 3억 5천1백만원 등을 전용하였음(결산서 p.46)
-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은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09회계연도 사고이월액 64억 6천6백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서 9억 9천6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예산전용의 경우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다는 이유로 전용한 것으로 2010년에 심의 의결한 예산을 2009년 사고이월 사업에 전용하는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은 2010년도 예산 45억원에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서 40억 8천6백만원을 전용하여 전망 복합문화시설(자벌레) 추가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은 2010년도 예산 60억원, 사고이월 49억 2백만원에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서 6억 8천3백만원을 전용하여 물빛광장 음향, 분수추가 조성비로 집행하였음

- 본 사업은 2009회계년도 결산시에도 2010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전용/사업변경을 통해 39억 8천만원을 변칙적으로 확보한 것이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난지, 뚝섬, 여의도 특화공원조성사업 예산전용은 사업물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사업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용승인일자가 4월 29일, 5월 18일인데 공사준공일은 5월 20일, 5월 31일, 6월 30일 등으로 공사비의 정산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전용을 통해 확보한 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용사용의 도입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변경과 세목변경을 변경사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10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9건, 11억 6천7백만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변경사용한 것임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U-한강구축사업」은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로, 감리비는 2010년 본 예산에서 당연히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만을 확보한 후 그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하는 것은 변칙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 □ 민간자본투자 사업에 위법한 시재정 투입

- 세빛둥둥섬의 부속시설인 미디어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람석을 시비(12억 2천3백만원)를 사용하여 조성하였음
- 당초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프로라(주)가 조성하도록<sup>27)</sup>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협약서 제48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민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시재정을 투입한 것임
- 그러나 세빛둥둥섬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선박법」에 근거한 시설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만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협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투법시행령 관련 조항은 지원근거로 볼 수 없음
- 또한, 관람석 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망원그린웨이 조성사업”에서 조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sup>28)</sup>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박지준설공사”는 세빛둥둥섬의 수상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그 하부를 준설하는 기초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지만 전체 준설물량(76,300m<sup>3</sup>)중 일부인 40,500m<sup>3</sup>을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사업” 예산(42억 3백만원)을 사용하여 집행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11억 6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 주었음<sup>29)</sup>

27)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48조 제5항에 규정한 주차장 부지(약200대분)의 경우도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조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MAG 관람석조성에 시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28)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그림 2> 세빛둥둥섬과 미디어아트 갤러리

#### □ 종합의견

-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세빛둥둥섬이나 여의도요트마리나 조성사업 등 민자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 공사기간동안 하천점용료가 징수되지 않아 세입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실제 점용기간을 고려하여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임

- 세출의 경우 인건비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 부서로부터 이용한 금액이 20억 1천6백만원으로, 인건비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법적 근거없이 본부장 방침만으로 시재정을 투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sup>30)</sup>

## 물 관리 기획관 산하 물 관리 정책과 소관

### 가. 일반회계

#### 1. 세 입

-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4억 13백만원이었으나 4억 3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4억 23백만원이 수납되고 15백만원은 미수납되어 결손 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당해연도 수납율은 96.6%로 전년(100%) 대비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74백만원)의 수납율이 83.1%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sup>30)</sup> 감사원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음

[표] 년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 처	다음년도 이월액	
2010	413	413	438	423	15	0	15	96.6
2009	325	325	4,087	4,087	0	0	0	100
2008	296	296	323	323	0	0	0	100

## 2. 세 출

###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177억 2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29백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98억 58백만원으로, 이중 81.0%인 241억 77백만원을 지출하고 0.8%인 2억 3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2%인 54억 48백만원임.

[표] 년도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 경	전 용	이용/이체	예 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2010	17,729	12,129	0	117 -117	0	0	29,858	24,177	233	5,448 (18.2)
2009	50,814	261	0	0	0	0	51,075	17,658	12,130	21,287 (41.7)
2008	6,835	1,426	0	2	20	83 -83	8,344	7,001	286	1,057 (12.7)



## 나) 변경

- 예산의 변경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세출예산 중 변경사용은 1건으로 ‘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정 설치’에 1억 17백만원을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에서 변경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0년 4월 9일 “사평역 지하수오염 원인 규명 조사를 위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산성교회 인근에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관측정 설치를 위하여 2010년 6월에 1억 17백만원을 예산변경한 것이며, 2011년 세출예산에도 지하수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위하여 2억 2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 불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2%인 54억 48백만원으로 전년(212억 87백만원, 4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 주요 사업 중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은 당초 시비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상반기에 국비가 교부되어 시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비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불용율이 28.6%였고,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은 재생수 공급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으로 불용율이 69.8%로 높았으며, 특히 ‘서울 물포럼 운영’은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사업성격과 유사하여 사업을 종료시킴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으로 불용율이 84.7%로 높게 나타나는 등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 6.1%에 비해서

는 아직 높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예산 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표] 불용율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내역	
				불용액	비율(%)
1	서울 물포럼 운영	20	3	17	84.7
2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	1,900	574	1,326	69.8
3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	147	105	42	28.6

- 한편,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는 예산변경 후 예산현액은 79억 15백만원으로 실개천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율은 11.85%였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심속 실개천은 자연정화기능이 없는 인공적인 시설물로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일부에서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실개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액 구비)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조성된 9개소의 실개천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총 2건, 2억 33백만원으로 관련사업 예산현액(4억 95백만원) 대비 47.1%에 해당하며, 2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용역기간 지연)에 의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 용역 1억 52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81백만원

## 나. 특별회계

### 1. 세입

- 2010회계연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3억 9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11억 8백만원이며, 수납율 100%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표] 년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 처분	이월액	
2010	12,122	0	12,122	12,502	12,502	0	0	0	100
2009	13,747	109	13,856	13,370	13,370	0	0	0	100
2008	13,854	0	13,854	14,037	14,037	0	0	0	1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111억 8백만원)으로 88.8%를 차지하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정부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170원/m<sup>3</sup>)<sup>31)</sup>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강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로 보조하고 있음.

[표] 2009~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조성액	주민 지원사업	환경 기초시설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	오염총 량관리	기타 수질개 선사업	기본 경비	예치금
2011	427,870	66,506	241,684	56,911	9,849	4,047	32,044	7,003	9,826
2010	419,352	66,087	180,970	107,551	11,519	1,727	33,730	6,691	11,077
2009	384,498	73,488	174,570	84,805	9,217	1,833	33,804	6,781	105,155

31) 2011년 1월부터 160원/m<sup>3</sup>에서 170원/m<sup>3</sup>으로 인상

- 한편,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약 44.3%를 분담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중 서울시 면적이 0.3%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6%의 교부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교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시도별 한강수계관리기금 분배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계	사무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2010년	4,195	1,390	112	12	1,767	643	271
	(100%)	(33.1%)	(2.6%)	(0.3%)	(42.2%)	(15.3%)	(6.5%)
2009년	4,724	1,418	121	18	1,878	976	313
	(100%)	(30.0%)	(2.6%)	(0.4%)	(39.7%)	(20.7%)	(6.6%)

## 2. 세 출

### 가) 개 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21억 22백만원으로 이중 120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9억 6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표] 년도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 비	변 경	전 용	이용/이체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2010	12,122	0	0	0	18 -18	0	12,122	10,880	281	961 (7.9%)
2009	13,747	109	6	11 -11	1 -1	0	13,856	12,002	0	1,854 (15.4%)
2008	13,854	0	0	8	14	0	13,854	12,771	109	974 (7.6%)

(2) 불용액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9억 61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15.4%인 18억 54백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 중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5.4%로 나타나고 있음.
- 불용율 10% 이상인 과다 불용사업은 ‘물관리 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등 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표] 불용율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43	33	8	22.7
2	잠실상수원 관리	720	588	132	18.3
3	기본경비	87	75	12	13.4
4	잠실상수원퇴적물 준설	2,016	1,614	216	10.7

-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불용율 43.4%에 이어 2010년도 예산편성 외에 추가로 배정된 한강수계기금의 국외여비, 기타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현액 대비 22.7%가 불용되었고, ‘잠실상수원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보수 불용액 발생, 수상 청소선 매각으로 공공운영비 불용액 발생, 기타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18.3%(전년도 22.7%)가 불용되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예산 산정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3)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용은 총 2건에 18백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4) 다음연도 사고이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총 2건, 2억 81백만원으로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1억 86백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하천유량 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관련법 개정(’10.5.31) 및 후속조치<sup>32)</sup>로 인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0월 25일에 예산을 교부받음에 따라 용역기간(’10.12.28 ~ ’11.12.27) 부족으로 지출원인행위액 100%인 95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됨으로써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2) ’10.5.31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협의완료(’10.10.1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 8. 심사결과

- 2010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원안가결
- 201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참고자료 : 없음